

##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제정

### 기술자료 부당 요구·유용행위의 구체적 사례 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다양한 기술탈취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술자료의 개념, 유형, 위법성 판단기준 등을 규정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새로 제정해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서 보유한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유용해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심사지침을 제정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제정된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기술자료에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 제조·시공·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등을 포함하고, 하도급법·시행령에 규정된 기술자료의 범위를 영업비밀과 관련한 유사 입법례와 법원 판례 등을 활용해 구체화해 “기술자료”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심사지침의 적용 범위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계약 체결 전 행위도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술자료 요구사례 중에서 정당한 경우와 부당한 경우를 다양하게 예시했는데 △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 △ 기술 지도, 품질 관리를 명목으로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 △ 기술자료 미제공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태도를 보여 기술자료 제공을 유도 △ 기술이전계약 체결 후 약정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고 자료제공을 요구 △ 공동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출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비밀유지의무 등을 합의한 후 기술자료를 공유 △ 제품 하자 원인규명 등 품질의 공동관리를 위해 비밀유지의무 등을 합의한 후 기술자료를 공유하는 것 등이다.

또한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사례를 상세하게 예시했는데 △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을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제3자를 통하여 제품을 상용화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그 기술을 제공하여 가격경쟁을 하도록 한 후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면서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여 수급사업자 기술에 대한 특허권 등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출원하는 경우 등을 정리했다.

이와 함께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요구일 등을 포함하는 표준 서식도 마련했다.

## 소프트웨어사업 등 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원칙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깎을 수 없게 하고, 부득이하게 깎을 때는 사유를 사전 통보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이후에 상당기간이 경과했거나 업계의 거래형태가 변한 4개 업종인 소프트웨어사업, 건축설계업, 화물취급업, 건축물유지관리업 분야 등 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4개 업종 공통 개정사항으로 감액금지 및 감액사유 사전통지의무를 신설했다.

당초의 계약 내용대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사업자의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되 정당성 여부는 원사업자가 입증하도록 규정했으며,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감액할 경우는 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감액사유 및 기준 등이 명시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도록 의무화 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요구 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미리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조항 등을 신설했다.

또한 원사업자가 경제상황 변동 등으로 발주자로부터 대금조정을 받은 경우에 그 사실을 수급사업자에게도 통지하도록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대금 조정내역 통지의무를 신설했다.

소프트웨어사업 분야 개정사항으로는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원재료의 가격 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정신청에 대한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못하도록 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등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의무제를 신설했다. (제8조, 건축물유지관리업, 화물취급업과 공통)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상충부분에 대해서는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이 우선한다”는 규정은 개별계약으로 표준계약서에 의한 기본계약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어 삭제했다.

건축물유지관리업·화물취급업 개정사항으로는 건축물유지관리(화물취급) 위탁을 하면서 건축물유지관리(화물취급) 업무와 관련된 물품·장비 등을 구매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제5조의 2)하고,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의무제 등을 신설해(제7조) 원자재가격 상승에 관한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무위원회 통과

###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 강화와 온라인 완결 서비스 도입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29일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 강화 등을 위해 마련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의원발의안 12건에 대한 정무위 대안이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통신판매중개자 책임강화(안 제20조 및 제20조의2)가 있다. 즉, 오픈마켓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상품판매자(중개 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직접 알리도록 하며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연대배상토록 하고, 아울러 이들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그리고 온라인 완결 서비스 도입(안 제5조 제4항부터 제7항)에 있어서, 전자상거래업자들이 회원모집과 상품판매는 온라인으로 하도록 하면서 회원 탈퇴나 청약 철회는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하게 해 소비자 피해를 없애기 위하여 회원 탈퇴나 청약 철회 등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재화 등의 거래와 관련한 확인·증명을 전자문서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전자적 대금지급 고지 절차를 명확화(안 제8조제2항)했는데, 통신판매업자가 상품 등의 대금을 청구할 때는 청구내역 등을 미리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채로 대금이 자동결제되는 등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명확한 설명이나 고지 없이 소비자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홍보성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지행위에 신유형 추가(안 제21조 제1항 제7호), 시정조치 내용에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추가 및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가 방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요건도 확대(안 제32조 및 제34조)됐다.

한편 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는 △ 신원정보 고지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의무를 지는 선불결제수단 발행자의 범위 확대(안 제8조 제4항) △ 소규모 통신판매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호스팅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을 맺는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분쟁 발생시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그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 부과(안 제9조 제2항) △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면제 규정을 삭제해 모든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하여 신원정보 확보(안 제12조 제1항) △ 공급자 및 판매자와 재화 등의 내용 정보 표시를 의무화하고, 계약자에게 동의를 받아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계약자 이외에 상품을 실제 배송받는 자에게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자 및 상품정보 표시 의무화 및 계약서면 교부대상 추가(안 제13조 제2항) △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상품이 미배송된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가 결제 취소 등 소비자 피해 회복에 협력하도록 함(안 제24조 제3항) △ 불법 구매권유광고에 대한 규제를 정통방법으로 일원화(안 제24조의2) 했다.

## 11개 대형유통업체의 상품군별 평균 수수료 수준 최초 공개

### 백화점·TV홈쇼핑의 의류 판매수수료를 평균 30% 이상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백화점, 5개 TV홈쇼핑 및 3개 대형마트 등 11개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수준을 종합해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에 판매수수료가 공개된 유통업체로는 롯데, 현대, 신세계 백화점과 GS, CJO, 현대, 롯데, 농수산홈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이다.

3개 백화점의 상품군별 평균 판매수수료율의 특징을 살펴보면 의류, 구두, 화장품, 잡화 등의 평균 수수료율이 30%를 넘는 수준이고, 식품, 가구, 완구 등은 20%대이며, 가전제품이 19%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 범위의 특징으로는 같은 상품군 내에서도 판매수수료율이 10%p 이상 차이가 났다.

5개 TV홈쇼핑의 상품군별 평균 판매수수료율의 특징은 백화점과 마찬가지로 의류 상품군(여성의류·남성의류)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반적으로 30%를 넘고 최고 4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전·디지털기기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런 차이의 발생은 백화점과 마찬가지로 TV홈쇼핑과 납품업체간 거래상 지위의 차이가 크게 좌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 범위의 특징으로는, 판매수수료율의 범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해당 상품군 내에 얼마나 많은 납품업체가 존재하고 이들 납품업체간 브랜드 파워 등의 차이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상품군 내에서도 판매수수료율이 20%p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데 백화점과 비교할 때 TV홈쇼핑이 그 범위가 더 넓은 것으로 인정되며, 이는 판매수수료율의 결정이 납품업체(입점업체) 단위로 이루어지는 백화점과 달리 TV홈쇼핑은 상품품목별로 이루어져 판매수수료율 차별화가 보다 용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3개 대형마트의 상품군별 평균 판매장려금률의 특징은 가공식품, 가정·생활용품의 평균 판매장려금율은 8~1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고, 신선식품 및 스포츠·레저용품 상품군은 3~5%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것이다. 상품군별 판매장려금율 범위의 특징은 같은 상품군 내에서도 통상 판매장려금율이 10%p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차이가 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상품군별로 거래하고자 하는 업체 수와 거래하고 있는 업체 수가 상이하고 이들 업체의 협상력 등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위는 수수료 수준에 대해 대형유통업체뿐만 아니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보다 정밀한 분석을 실시했는데, 납품업체가 판매수수료 이외에 추가 부담하는 실태와 상품군, 기업규모, 브랜드 파워 등에 따른 판매수수료 수준의 차이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수수료 수준 결정에서 대형유통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중소 납품업체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업체별·상품군별로 5~10%의 중소 납품업체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해 수수료 변화 추이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했다. 또한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지 수수료 수준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유도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의 협약이행 평가 시에 평가항목 신설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의결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원칙적 과징금 부과사유를 구체화하고 소비자의 피해보상 정도에 따른 감경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6월 22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상습 범위반업체,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크거나 표시·광고행위에 악의성이 있는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여 법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 최고 50% 이내의 과징금 감경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사업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할 유인책도 제공하게 된다.

고시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표시·광고법 과징금은 공정거래법과 같이 △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기본 과징금을 정한 후 △ 위반행위의 횟수·기간·정도 등에 따른 의무적 조정 △ 가담정도, 고의·과실, 조사협조 여부 등에 따른 임의적 조정을 한 후 △ 최종적으로 사업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하는 4단계의 부과방식으로 산정하게 된다.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원칙적 과징금 부과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는데 △ 3년 2회 이상 범위반 사업자 △ 피해 소비자가 다수이거나 소비자의 인체·안전과 관련되어 있거나 재산상의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위반행위에 의해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 고의성이 농후하고 명백하게 허위인 경우 △ 악의적으로 다른 사업자나 상품을 비교 또는 비방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기본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0.1%~1% 범위 내에서 기본과징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는 500만 원~4억원의 범위 내에서 정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게 된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사유를 위반행위에 따라 구체화했는데, 위반행위 기간이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한 경우는 그 보상정도에 따라 최고 50%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과징금을 감경하게 된다.

조사거부나 방해의 경우는 30% 이내에서 가중하는 대신 조사협력과 자진시정의 경우는 각각 30%와 2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으며, 기업의 자율적인 범위반 예방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이나 소비자만족 자율관리 시스템(CCMS)의 도입 또는 모범 업체에 대해 20% 이내 감경 규정도 포함시켰다.

이번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6월 28일부터 시행됐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고시」 일부 개정 시행

### CP 문턱 낮춰 중소기업 보호 적극 추진·CP 운영 부담 완화 및 준법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CP 평가항목을 대폭 축소하고 직권조사 면제분야 확대 등 준법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고시」를 일부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자율준수 풍토를 확산 시켜 범위반에 따른 제재와 같은 기업의 위험요인을 방지함으로써, 시장경제 선진화에 따른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13개 평가항목 중에서 상호 중복되는 항목을 통합·조정해 7개 평가항목으로 대폭 축소함으로써 서류부담 경감시켰는데,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등급평가에 드는 부담을 완화해 CP의 저변 확산을 도모하고자 했다.

서면평가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현장방문 및 면담평가를 강화해 실질적인 CP 운영상황을 평가할 예정으로, CP 등급평가의 평가항목 통합·조정으로 기업 부담 간소화 및 평가의 내실화를 동시에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CP 도입 기업이 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경우는 '등급 산정시' 2단계 하향조정할 뿐만 아니라 '등급평가 후' 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기결정된 등급을 일률적으로 2단계 하향조정하는 고시 규정을 개정했다.

즉, 등급 산정 시에 비교적 경미한 법 위반인 시정명령은 1단계 하향조정하고, 과징금 및 고발의 경우는 2단계 하향조정해 위반정도에 따라 차등화했으며, 등급평가 후에는 과징금은 1단계, 고발은 2단계 하향조정(시정명령은 제외)하게 된다.

등급평가는 원칙적으로 지난 1년간 CP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취지여서, 평가 후에 발생한 법위반 및 제재에 따라 등급 하향조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직권조사 면제대상 법규의 범위를 확대했는데, 등급평가 A 이상인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3조에 의한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직권조사를 일정기간 면제하도록 했지만, 계열사간에 은밀하게 발생하는 부당지원행위는 신고사례가 적은 점을 감안해 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명백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는 직권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고사건의 경우도 직권조사 면제대상이 아니어서 법 집행이 제한되지 않는다.

한편, 등급평가 A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등급평가증을 수여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등급평가 참여 유인을 제고하고 있다.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기준 확정·원재료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인상되면 조정 신청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의 요건·절차, 대금 감액 혹은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기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하도급법(2011년 3월 29일 공포, 6월 30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공포된 후 6월 30일부터 시행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재료 가격 급등시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요건(제9조의2)을 명시했는데, 원재료가격 기준과 계약금액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즉, 원재료가격 기준에서는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15% 이상 상승한 경우, 계약금액기준으로는 원재료 가격 상승액이 향후 납품해야 할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기간 요건으로는 조합은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계약이 9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는 90일이 경과하지 않고도 조정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조합의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할 수 있는데, 조합은 원사업자가 협의해야 할 조합원, 신청요건이 충족되는 근거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즉시 조정개시(Fast Track) 요건(제9조의3)에 있어서는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서로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여야 한다.

개정안의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은 대금 감액,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에 기재할 사항을 밝히고 있다. 이 조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 기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감액 시에는 감액사유, 감액기준, 감액물량, 감액금액, 감액방법 등을, 기술자료 요구 시에는 목적, 비밀유지사항, 대가, 기술 명칭 및 범위, 요구일 등을 분명히 해야 한다.

##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청소년 연예인 보호조항 신설

### 과도한 노출과 학습권 침해 금지 등의 조항 포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다노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학습권, 인격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최근 소위 ‘아이돌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선도하면서 많은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연 중 어린 청소년들의 과도한 노출이나 장기간 공연준비에 따른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성인에 비해 청소년 인권을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설 조항은 “제18조(아동·청소년의 보호) ① 같은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 ② 같은 연예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예인의 연령을 확인하고 아동·청소년의 경우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과다 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 ③ 같은 아동·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도한 시간에 걸쳐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한 표준약관이 사용되면 청소년 연예인이나 부모는 과다 노출 강요나 장기간 수업 불참 등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그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고, 연예기획사의 경우에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정거래 관련 조문별 판례요지집’ 발간

###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하도급법 등 공정위 소관 주요 법률 관련 판례 총망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원 판례를 정리·증보한 ‘공정거래 관련 조문별 판례요지집’ 제5판을 발간해 사건처리 담당자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판례요지집은 2005년 4월 제1판을 발행한 이후에 새로운 판례를 추가한 증보판을 발행해 왔으며, 이번이 4차 증보판으로 6월 8일부터 배포했다.

이번에 발간한 제5판은 공정거래법 판례만 수록했던 제4판과 달리,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하도급법 등 공정위 소관 주요 법률에 관한 판례를 총망라한 것이 특징이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거래법의 주요 8개 행위유형별(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 경제력 집중 억제제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법원의 판시사항을 수록했으며,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및 하도급법 주요 판례 수록과 더불어 판례 탐색이 용이하도록 세부목차와 참조 판례 색인을 기재했다.

한편, 판례요지집은 공정위 소관 법률의 주요 쟁점에 관한 법원의 판시내용을 공정위의 사건 처리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발간하고 있다.



## 6만개 제조업체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 2차 이하 협력사 위반실태와 계약서 없는 거래실태 파악 역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자율적인 법 준수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월 15일부터 2011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매년 제조·건설·용역업을 함께 조사해왔지만 업종별 심층조사 등을 위해 금년부터 제조업과 건설·용역업을 분리, 격년제로 순환해 조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는 제조업 6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건설·용역업은 내년도에 조사할 예정이다.

제조업 관련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자(매출액 200억 원 이상)를 중심으로 3,000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원사업자 응답내용의 진정성 확인 등을 위해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수급사업자 5만 7,000개 업체를 설문조사하게 된다.

〈 2011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대상 업체 수 〉

구분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합계
조사대상 업체 수	3,000개	57,000개	60,000개

서면실태조사는 공정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 <http://hado.ftc.go.kr>를 통해 On-Line 방식으로 실시하게 된다.

올해 실태조사의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2차 이하 협력사의 범위만 실태를 파악하고, 대금 미지급 행위 이외에 계약서를 주지 않는 하도급실태를 파악해 이를 시정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소개했다.

또한 조사대상 업체들이 서면실태조사 취지를 쉽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사배경과 조사표 작성요령 및 최근 하도급법 개정내용 등에 대한 설명회(11개 시·도, 14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기 때문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거래 중단 등 보복을 우려해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수급사업자가 참여하는 상시감시체계 구축으로 원사업자의 관행화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제정 추진

### 경쟁제한적 M&A에 대해서는 매각조치 등 우선 고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M&A)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 기준 및 고려사항 등을 규정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현재 규제위 심의를 완료했고,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의결 후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구조적조치 우선고려 원칙’을 명시했다.

경쟁제한적 M&A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시 가격인상 제한, 물량 공급 유지 등 결합회사의 영업방식이나 범위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행태적 조치보다는, 시장구조 자체를 경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금지, 일부 자산 매각 등 결합회사의 소유구조에 일정한 변경을 가하는 구조적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규정한 것이다.

구조적 조치는 시장개입이 덜하면서도 경쟁제한성 치유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구조적 조치를 우선할 경우, 경쟁제한적 M&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보다 완벽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조치 도입 및 부과사유를 규정했다.

최근 국제논의 동향을 반영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주로 지식재산권의 중첩 또는 집중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경우, 지식재산권을 매각 또는 실시토록 하는 지식재산권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지식재산권조치는 자산매각조치 또는 행태적 조치의 한 유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를 독립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결합기업의 지식재산권의 통합에 따른 시장지배력 형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정조치의 일반원칙과 유형별 판단기준도 제시했다.

경쟁제한효과별 최적의 시정조치 선택을 위해 효과성의 원칙, 비례 원칙, 명확성 및 실현 가능성 원칙 등의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시정조치의 유형을 크게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로 구분해 각각의 부과유형 및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구조적 조치의 유형으로 금지조치, 자산매각조치, 지식재산권조치를 규정해 그 부과사유 및 기준을 설명하고, 행태적 조치의 유형으로 크게 경쟁사업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조치와 시장성과를 규제하는 조치로 구분하고 그 구체적인 유형을 별표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한 구체적인 시정조치 부과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정조치 부과에 있어서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워크숍’ 개최

김동수 위원장 “이제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 위해 행동할 때”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동 주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하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워크숍’이 5월 24일과 25일 양일간 파주에서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대기업 80여 개사의 동반성장 및 구매담당 임원과 59개 협력사 대표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해,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의 합리적 평가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해봤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워크숍에서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 동반성장 추진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대·중소기업 모두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실질적인 동반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경쟁 양상이 기업 네트워크간 경쟁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가격경쟁력에 초점을 맞춘 비용 최소화 전략 추진보다 품질과 브랜드가치 경쟁력에 초점을 맞춘 동반성장 전략을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워크숍을 계기로 대중소기업간 기업 생태계가 창의와 혁신을 유발하는 선순환적 생태계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주현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실장은 동반성장지수를 중심으로 하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평가방안’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학계·업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전개됐다.

한편, 이날 소개된 포스코건설과 협력사인 에스오건설·미래이엔씨 등 3개사를 비롯한 6개사의 동반성장 우수사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모범사례로, 향후 다른 회사에 전파되어 동반성장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밖에도 GS칼텍스와 유한기술, 이마트와 보승식품 등의 동반성장사례 발표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직접 동반성장을 실천하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참가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로 인해 동반성장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정위원장, 제10차 ICN 연차총회 참석 및 EU 집행위 방문

세계 9개 경쟁당국 최고책임자와 회동·글로벌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심사체 구성'에 의견 접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동수 위원장이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10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해 미국, EU, 일본 등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공정거래정책담당국 최고책임자와 경쟁정책의 세계적 확산 및 당국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동수 위원장이 한-EU간 상호 교역·투자 등 전반에 걸친 경제협력이 강화되어 경쟁 촉진과 소비자 권리 강화 등이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알무니아 EU 집행위원회 부의장 및 코기 소비자총국장과의 연쇄회의를 개최하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5월 16일부터 19일에 걸쳐 알렉산더 이탈리아너 EU 경쟁총국장, 그램 새뮤얼 호주 경쟁소비자위원장, 호아킨 알무니아 EU 집행위 부의장 겸 경쟁담당 집행위원, 필립 콜린스 영국 공정거래청장, 안드레아스 문트 독일 연방카르텔청장, 브루노 라세르 프랑스 경쟁위원장, 존 라이보위츠 미국 FTC 위원장, 다케시마 가즈히코 일본 공정거래위원장 등 8명의 세계 경쟁당국 수장들과의 연쇄회동을 갖고, 최근 경기회복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시장경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카르텔이나 독과점 남용 등과 같은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5월 18일 호아킨 알무니아 EU 집행위 부의장 겸 경쟁담당 집행위원과의 회의에서는 경쟁정책과 경쟁법 운영에 있어서 상호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7월 15일 알무니아 부의장이 한국을 방문해 양자협의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17일에 있었던 코기 EU 소비자총국장과의 회의에서는 소비자 정책 및 소비자 권리 강화 등을 위한 상호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조만간 개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19일에 있었던 다케시마 일본 공정거래위원장과와의 회의에서는 최근 세계경제 회복을 계기로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결합을 체계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는데 합의했으며, 향후 EU와 캐나다 등 주요 경쟁당국과도 이런 방안을 확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한·일 경쟁당국이 중심이 되어 '아시아지역 경쟁정책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논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번 논의는 최근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지역별·권역별 경쟁정책분야의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담합 20억원, 부당지원행위 10억원까지 신고포상금 상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을 최고 10배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 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담합과 부당지원행위 등 6개 위반행위 유형에 대해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상향조정했다. 담합(부당공동행위)은 최고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부당지원행위는 최고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사원판매행위 등 4가지 유형은 최고 1천만 원~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큰 폭으로 상향조정됐다. 담합 및 부당지원행위는 내부제보자의 신고 유도를 강화하기 위해 지급한도를 다른 행위유형보다 높게 설정했다. 그리고 지급구간과 지급기준율을 통일·상향하되 담합과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행위유형보다 높은 지급률을 설정했다.

〈 신고포상금 지급구간 및 지급기준율 조정안 (지급기본액 산정기준) 〉

행위유형	기존	개정
	지급구간 및 지급기준율	지급구간 및 지급기준율
담합(부당공동행위)	5억원 이하 : 5% 5억원~500억원 : 1% 500억원 초과 : 0.5%	5억원 이하 : 10% 5억원 초과~50억원 이하 : 5% 50억원 초과 : 1%
부당지원행위	5억원 이하 : 4% 5억원~500억원 : 1% 500억원 초과 : 0.5%	
부당고객유인행위	10억원 이하 : 3% 10억원~50억원 : 1% 50억원 초과 : 0.5%	5억원 이하 : 5% 5억원 초과~50억원 이하 : 3% 50억원 초과 : 1%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위반	4억원 이하 : 3% 4억원 초과 : 2%	
사원판매행위	4억원 이하 : 3% 4억원 초과 : 2%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4억원 이하 : 3% 4억원 초과 : 2%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과징금의 5%	

또한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수준에 따라 현행 3단계(상, 중, 하 3단계)에서 최상, 상, 중, 하 4단계로 세분화하고, 증거수준별 범위(구간)로 규정되어 있던 지급율을 고정(특정)시킴으로써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 유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2010년도 통계연보 발간

2010년 사건처리건수 3505건, 총 과징금 부과금액은 6081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0년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연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카르텔과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시정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LPG, 소주, 음료, 아파트입찰담합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카르텔 집중 감시를 비롯해 대형종합병원, 항공사, 오픈마켓 등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처리한 사건 수는 총 3,505건으로 전년대비 24.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위반에 해당되어 자진시정하게 하거나 경고 이상으로 조치한 사건은 총 2,125건으로, 전년대비 시정조치 건수가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한 분야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전년 2건에서 7건으로 증가(250%)했으며,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도 197건에서 262건으로 증가(33.0%)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시정조치 건수가 감소한 분야는 가맹사업법 △ 54.9%(1,472건→669건), 하도급법 △ 54.6%(1,472건 → 669건), 방문판매법 △ 20.2%(84건 → 67건) 순이었다.

2010년도의 과징금 부과액은 6,081억 원으로 전년대비 63.9% 증가했는데, LPG 담합 4,094억 원, 항공화물 국제카르텔 843억 원, 아파트건설공사 입찰담합 330억 원 순이었다.

2010년 356건의 처분 중 소송제기건 수는 33건(9.3%)으로 이 중 5건에 대해 판결이 확정됐으며 승소는 4건, 패소는 1건이었다. 2010년도에 확정 판결된 73건 중 55건은 공정위가 전부승소(75.3%)했으며, 전년대비 전부승소율은 0.9%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2개 외식업종 가맹본부 CEO와 간담회 개최

가맹분야에서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문화 확산 도모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업종 가맹분야에서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가맹본부 CEO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5월 11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외식업종 가맹본부 CEO와의 간담회는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의 주제로, 롯데제과, 비알코리아, 샤니, 파리카라상, 씨제이푸드빌, 크라운베이커리, 제너시스, 교촌에프엔비, GD FOOD, 농협목우촌, 한강씨엠, 이랜드월드, 동원홈푸드, 동원산업, 사조씨에스, 롯데리아, 한국피자헛, 미스터피자, 한국도미노피자, 본아이에프, 놀부, 원앤원 등 총 22개 가맹본부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맹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및 문화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가맹시장을 선도하는 가맹본부의 CEO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루어졌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한 공정위는, 외식업종 가맹사업의 실상에 대해 CEO와 인식을 공유하고 거래실태 개선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고 덧붙였다.

## 2011년 5월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6월 1일 현재, 55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수는 1,571개로 지난달 1,549개에 비해 편입 28개와 제외 6개로 22개 회사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 2011년 5월 중 소속회사 수 변동 현황 〉

기업집단	2011. 5.2.	편 입				제 외							증감	2011. 6.1.
		회사 설립	지분 취득	기타	계	흡수 합병	지분 매각	청산 종결	친족 분리	지정 제외	기타	계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 (55개)	1,549	16	8	4	28	3	3	-	-	-	-	6	22	1,571

편입내역을 살펴보면 17개 집단에서 회사 설립, 지분 취득 등으로 총 28개 소속회사가 증가했다. △ 회사 설립 {삼성 : 삼성바이오로직스(주), 에스티엠(주) / 신세계 : (주)이마트 등 16개 △ 지분 취득 {에스케이 : 두영(주), 김천에너지(주) / 엘지 : 에이스냉동공조(주) 등 8개 △ 기타 4개 {효성 : (주)아이비스포츠, (주)에브리쇼, (주)아이비미디어넷, (주)에스앤이} 등이다.

제외내역을 살펴보면 5개 집단에서 계열사 흡수합병, 지분 매각 등으로 총 6개 소속회사가 감소했다. △ 흡수합병 {두산 : 동현엔지니어링(주) / 태광 : 유덕물산(주), 성광산업(주) 3개 △ 지분 매각 {엘에스 : 에이스냉동공조(주) / 효성 : 지미디어(주) 등 3개였다.

## 2011년 6월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

2011년 7월 1일 현재,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55개의 소속회사 수는 1,578개로 지난달 1,571개에 비해 편입 19개와 제외 12개 등 7개 회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6월 중 소속회사 수 변동현황 〉

기업집단	2011. 6.1.	편 입				제 외							증감	2011. 7.1.
		회사 설립	지분 취득	기타	계	흡수 합병	지분 매각	청산 종결	친족 분리	지정 제외	기타	계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 (55개)	1,571	11	5	3	19	1	2	2	1	-	6	12	7	1,578

편입내역을 살펴보면 14개 집단에서 회사 설립, 지분 취득 등으로 총 19개 소속회사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 회사 설립 11개 {삼성 : 에스에스엘엠(주) / 에스케이 : 에스케이에스엠(주) 등 △ 지분 취득 5개 {케이티 : 스마트채널(주) / 씨제이 : (주)잼스튜디오 등 △ 기타 3개 {롯데 : 농업회사법인(주)에치유아이 / 동부 : (주)세실에이스} 등이다.

제외내역을 살펴보면 8개 집단에서 계열사 흡수합병, 지분 매각 등으로 총 12개 소속회사가 감소했다. 구체적으로는 △ 흡수합병 1개 {코오롱 : 캄브리지코오롱(주) △ 지분 매각 2개 {한국도로공사 : 하이플러스카드(주) / 지에스 : 새한정보시스템(주) 등 △ 청산종결 2개 {엘지 : (주)와이즈벨 / 영풍 : 케이지엔지니어링(주) 등 △ 친족 분리 1개 {태광 : (주)그린스프링} △ 기타 6개 {현대자동차 : 희망세움(주) / 유진 : 엔브이에쿼티펀드1호PEF} 등이었다.

## 공정위 소식

### 공정위 인사 동향 (2011. 5. 4. ~ 7. 4.)

#### 5. 4.

- ▶ **공정거래위원회 기능8급(사무실무원) 김성열** 복직을 명함.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근무를 명함.

#### 5. 9.

- ▶ **카르텔조사국 국제카르텔과장 서기관 김정기**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장에 보함.
- ▶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유수현** 카르텔조사국 국제카르텔과장에 보함.
- ▶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이경만**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실 파견근무를 명함(기간:2011.5.11.~2012.4.10.).

#### 5. 11.

-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행정주사 박현욱**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근무를 명함.
-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행정주사보 김은영**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근무를 명함.

#### 5. 16.

- ▶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행정주사 손영기** 고용노동부 전출을 명함.
- ▶ **고용노동부 행정주사 채진희** 공정거래위원회 전입을 명함.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근무를 명함.

#### 5. 17.

- ▶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유성욱** 대통령실 전출을 명함.

#### 5. 23.

- ▶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행정사무관 이동미**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휴직을 명함 (기간:2011.5.23.~2012.5.22.).

#### 5. 24.

- ▶ **기업협력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성하** 기획조정관에 보함.
- ▶ **카르텔조사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정종원** 경쟁정책국장에 보함.
- ▶ **기획조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순종** 카르텔조사국장에 보함.
- ▶ **경쟁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지철호** 기업협력국장에 보함.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안병규**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2011.5.24.~별도발령시까지).

#### 5. 27.

- ▶ **심판관리관실 경쟁심판담당관 서기관 배영수**
-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 서기관 박원기** 부이사관에 임함.
- ▶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행정사무관 손계준**
- ▶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행정사무관 한유성, 행정사무관 장영신**
- ▶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최장관** 서기관에 임함.

#### 5. 28.

-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기능8급(사무실무원) 김성열**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근무를 명함.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명함.
- ▶ **공정거래위원회 기능9급(사무실무원) 권애진** 복직을 명함.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근무를 명함.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행정서기 박영희**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근무를 명함.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면함.

**6. 3.**

- ▶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서기관 손계준**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지원근무를 명함(기간:2011.6.3.~별도발령시까지)
- ▶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오동욱**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지원근무를 해제함.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근무를 명함.
- ▶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실 서기관 배찬영**  
심판관리관실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 ▶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박세민**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2호(유학휴직)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휴직기간:2011.6.6.~2012.8.10.).
- ▶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안병훈**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2호(유학휴직)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휴직기간:2011.6.10.~2012.8.14.).
-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 행정사무관 신현대**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실 지원근무를 해제함. 심판관리관실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실 지원근무를 명함(기간:2011.6.3.~별도발령시까지).
- ▶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행정사무관 김원태**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서기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실 행정주사 김덕이**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실 지원근무를 명함(기간:2011.6.3.~별도발령시까지).

**6. 10.**

- ▶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실 행정주사 배지영**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 지원근무를 명함(기간:2011.6.10.~별도 발령시까지).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이미옥**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실 지원근무를 해제함.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이수진**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실 지원근무를 명함(기간:2011.6.10.~별도발령시까지).

**6. 13.**

- ▶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행정사무관 박의진**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지원근무를 명함(기간:2011.6.13.~별도발령시까지).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김유진**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지원근무를 해제함.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근무를 명함.
- ▶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조선영**  
국방부 전출을 명함.
- ▶ **국방부 행정사무관 오영진**  
공정거래위원회 전입을 명함.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근무를 명함.
- ▶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행정사무관 강동운**  
농림수산식품부 전출을 명함.
- ▶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사무관 임선경**  
공정거래위원회 전입을 명함.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지원근무를 명함(기간:2011.6.13.~별도발령시까지)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박국연**  
파견복귀를 명함.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 ▶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이택길**  
행정안전부 전출을 명함.
- ▶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관 고세경**  
공정거래위원회 전입을 명함.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6. 20.**

- ▶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서기관 이승규**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2011년도 국비장기 국외훈련계획에 의거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Irvine 파견근무를 명함(파견기간:2011.6.20.~2013.6.19.).
- ▶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실 행정서기(시보) 신창숙**
- ▶ **감사담당관실 행정서기(시보) 정정란**
- ▶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실 행정서기(시보) 성복용**

## 공정위 소식

- ▶ 운영지원과 행정서기(시보) 이순형, 행정서기(시보) 강연주
- ▶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행정서기(시보) 윤은숙
- ▶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행정서기(시보) 최선아
- ▶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행정서기(시보) 이영미
-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행정서기(시보) 한정희
-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행정서기(시보) 추미라
-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행정서기(시보) 이곡숙
-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행정서기(시보) 김현주  
행정서기에 임함.

### 6.21.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박선정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근무를 명함.

### 6.24.

- ▶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정희은  
캐나다, Competition Bureau of Canada 파견기간 연장을 명함(파견연장기간:2011.6.25.~2012.6.24.).

### 6.25.

- ▶ 심판관리관실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서기관 오행록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2011년도 국비장기 국외훈련계획에 의거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파견근무를 명함(파견기간:2011.6.25.~2012.8.24.).

### 6.27.

- ▶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부단장 서기관 홍대원  
심판관리관실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에 보함.
- ▶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실 서기관 장혜림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제2부단장에 보함.
-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행정주사보(시보) 김준홍
-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행정주사보(시보) 김종민
-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행정주사보(시보) 강은호
-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행정주사보(시보) 신희옥
-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행정주사보(시보) 장미선
-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행정주사보(시보) 권순길  
행정주사보에 임함.

### 6.29.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홍형주  
복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6호에 의거 휴직을 명함(기간:2011.6.29.~2012.6.28.).

### 6.30.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김의래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2011.6.30.~별도발령시까지).

### 7.1.

- ▶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지걸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함(기간:2011.7.1.~2012.6.30.).
- ▶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조홍선  
복직을 명함.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장에 보함.
- ▶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장 서기관 최영근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1호(고용휴직)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기간:2011.7.1.~2012.6.30.).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김주연  
복직을 명함.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 7.4.

- ▶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 행정사무관 김준영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서기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 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문경만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와 근무를 명함.
- ▶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장주연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근무를 명함.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안병규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지원근무를 해제함.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근무를 명함.